



# 환경법 위·반·사·례

## 대기(수질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

- 대기(수질)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,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대기(수질)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됨.

### 사례 1

- 위반내용 :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
- 관 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
- 조치사항
  - 고발(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 및 조업정지 10일
- 위반사례
  - (주)00업체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용해시설(5.5m<sup>3</sup> 2기)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(세정식 집진시설 140m<sup>3</sup>/분 1기)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면서 00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.

### 사례 2

- 위반내용 :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
- 관 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
- 조치사항
  - 고발(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) 및 조업정지 10일
- 위반사례
  - 00은 식품가공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로 신고를 하였으나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위탁폐수저장조에

##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

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을 보관·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와 운반차량에 적절한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함.

### 사례 3

- 위반내용 : 유독물에 관한 표시 미부착
- 관 련 법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
- 조치사항
  - 100만원 이하의 벌금
  - 행정처분 : 1차 경고, 2차 영업정지 5일
- 위반사례
  - 유독물사용업체인 00(주)는 2002년 00월 00일 지도·점검시 생산공정중 사용하는 유독물인 염산(30m<sup>3</sup>)을 탱크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.

### 사례 4

## 폐기물의 수집·보관·처리기준 등

-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적절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함.
-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 또는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.
- 위반내용 :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(지정폐기물의 옥외보관)

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2조
- 조치사항
  -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행정처분(조치명령)
- 위반사례
  - 00(주)업소는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소(생산품 : 실린더)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2.2톤(13드럼)을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철제 드럼으로 포장한 후 사업장 부지내 옥외 주차장 일부 지역에 임의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.

- 조치사항
  -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
- 위반사례
  - 2003년 00월 00일 (주)00업소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(BOD)항목이 241.6mg/ (배출허용기준 120mg/ ), 총질소가 400.0mg/ (배출허용기준 60mg/ ), 크롬이 7.54mg/ (배출허용기준 2mg/ ), 아연이 6.97mg/ (배출허용기준 5mg/ ), 납이 5.96mg/ (배출허용기준 1mg/ )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

사례 5

- 위반내용 :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(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)
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2조
- 조치사항
  -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행정처분(조치명령)
- 위반사례
  - (주)00업소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(액, 고상)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,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폐유(액, 고상) 약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(25일 초과 보관)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.
  - \* 지정폐기물중 폐산·페알카리·폐유·폐유기용제·폐촉매·폐흡착제·폐농약 등은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.

사례 7

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

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.

- 위반내용 :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
- 관련 법 :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
- 조치사항
  - 과태료(100만원이하), 경고(2차위반시 경고,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)
- 위반사례
  - 00은 건축물 자재 찌드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·조업하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2002년 00월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기록 보존치 않고 있었음.

사례 6

배출허용기준 초과

○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업하여야 함.

- 위반내용 : 배출허용기준 초과
- 관련 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